

1. 개정이유

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개정 및 연기·철회 신청서식 신설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. 또한, 시행령에 규정된 선정위원회 구성과 지원 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,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(안 제2조 개정)

- 1) 지원 결정 결과 통지를 원활히 하고, 지원 대상자 결정 시 필요한 정보인 해외범죄경력정보를 신청 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2) 지원 결정 결과 통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, 지원 여부 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범죄경력정보를 제출하도록 함.

나.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3조 신설)

- 1)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.
- 2) 선정위원회의 구성, 회의 개최 시 5일 전 안건 서면 통지를 규정함.

다. 지원 여부 및 대상자의 결정(안 제4조 신설)

- 1)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

대상자 결정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2) 지원 여부 결정 및 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함.

라.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절차(안 제5조 신설)

- 1) 지원 여부 결정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2)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표시한 결과 통지 방식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 결과를 통지함.

마. 지원 연기 신청 서식 신설(안 제6조 신설)

- 1) 지원 연기 신청이 문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.
- 2) 지원 대상자가 신청 연도 다음 연도 2월까지 입국이 어려울 경우 지원 연기 신청을 위한 별지 제2호서식을 신설함.

바. 지원 철회 신청 서식 신설(안 제7조 신설)

- 1) 지원 철회 신청이 문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.
- 2)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철회할 경우 지원 철회를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을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4.23.~6.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강화 있음

외교부령 제 호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)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재외동포청·법무부·보건복지부·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, 대한적십자사·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위원회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외동포청 소속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여부 및 대상자의 결정) ①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영 제5조제1항의 안전보장·질서 유지·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, 판단의 세부 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.

②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 결정의 세부 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절차)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표시한 결과 통지 방식에 따라 본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 연기 신청)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7조(지원 철회 신청)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4. 7. 17.>

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✓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양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접수기관(재외공관 등/대한적십자사)	처리기간 신청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
사할린동포 신규 신청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	여권 번호	여권 유효기간]	
	주소		전자우편 주소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
결과통보 방식: [] 우편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

※ 아래 표는 이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기존 영주귀국 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[]	성명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
※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반가족은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칸을 작성합니다.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	
	여권 번호	여권 유효기간		
	주소			전자우편 주소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	
결과통보 방식: [] 우편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할린동포와의 관계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	
	여권 번호	여권 유효기간		
	주소			전자우편 주소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	
결과통보 방식: [] 우편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
	성명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사할린동포와 의 관계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	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여권 번호	여권 유효기간		
	주소	전자우편 주소		
	입주희망: [] 아파트 [] 양로원 [] 요양원 [] 전문요양원			
결과통보 방식: [] 우편 [] 전자우편 [] 문자메시지				

	년	월	일
사할린동포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
재외동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할린동포인 경우: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, 범죄경력증명서 1부 2. 동반가족인 경우: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, 자녀·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, 범죄경력증명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

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심사 및 결정 → 통지

신청인 대한적십자사 회장 재외동포청장 신청인

```

graph LR
    A[신청서 제출] --> B[접수]
    B --> C[심사 및 결정]
    C --> D[통지]
    A --- A1[신청인]
    B --- B1[재외공관장 등]
    C --- C1[재외동포청장]
    D --- D1[신청인]
  
```

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연기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접수기관(재외공관 등/대한적십자사)	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사할린동포 신규 신청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	주소		

기존 영주귀국 ·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[]	성명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
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
	성명 (한글)	성별 [] 남 [] 여
	(영문)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
	주소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
	주소	

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
위와 같이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연기를 신청합니다.

	년	월	일
사할린동포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
※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,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.

재외동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할린동포인 경우: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
	2. 동반가족인 경우: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, 자녀·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없음

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

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신설 2024. 7. 17.>

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✓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접수기관(재외공관 등/대한적십자사)	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사할린동포 신규 신청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	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	주소		

※ 아래 표는 이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기존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[]	성명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
※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반가족은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칸을 작성합니다.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
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
	주소	

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 []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
	성명 (한글) (영문)	성별 [] 남 [] 여
	생년월일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
	주소	

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철회합니다.

	년	월	일
사할린동포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동반가족			(서명 또는 인)

※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인인 경우, 사할린동포의 서명 또는 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.

재외동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할린동포인 경우: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
	2. 동반가족인 경우: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, 자녀·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없음

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)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.	제2조(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)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<신 설>	제3조(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재외동포청·법무부·보건복지부·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, 대한적십자사·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②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위원회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.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외동포청 소속 위원으로 한다.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

	하는 때에는 일시·장소 및 안전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제4조(지원 여부 및 대상자의 결정) ①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영 제5조제1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, 판단의 세부 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. ②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 결정의 세부 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. 제5조(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절차)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표시한 결과 통지 방식에 따라 본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제6조(지원 연기 신청)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		<신 설>	제7조(지원 철회 신청)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<신 설>				
<신 설>				
<신 설>				